사 규 번 호	
관 리 부 서	
등 급	일 반

보상위원회 규정

Samyang Foods

보상위원회 규정

2021.03.26 제정

2025.11.12 개정

제 1장 총칙

제 1 조(목적)

이 규정은 정관 39조의2, 이사회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된 삼양식품 주식회사(이하 '회사'라 한다)의 보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(기능)

①위원회는 임원들이 내부적으로 공평하고 외부적으로 경쟁력 있는 보상수단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보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사회의 책임을 수행한다.

②이 규정상 임원은 상법상 등기임원인 사내이사를 의미한다.

제 4 조(직무와 권한)

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이외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심의 및 결의한다.

1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심의
2. 성과목표 이행 실적에 따른 임원 보상 체계
3. 임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
4.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
제 2 장 구성

제 5 조(구성)

①위원회의 위원(이하 '위원'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
②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을

원칙으로 하나, 필요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.

③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.

④위원의 해임은 이사 총수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결의로서 가능하며, 이사회는 해임, 이사의 임기만료 또는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 사유발생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 전까지 충원을 해야 한다.

제 6 조(위원장)

①위원회의 결의로 위원장을 선임한다.

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
③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회의

제 7 조(소집)

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소집한다.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 6조 3항을 준용한다.

③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④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에 일시, 장소, 의안 등을 각 위원에게 구두, 전자우편, 문서 등 1개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⑤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4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8 조(개최주기)

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추가 개최할 수 있다.

제 9 조(결의방법)

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②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 10 조(관계인의 의견 청취)

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0 조의2(외부 자문 등)

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로부터 독립된 법률고문 등 외부 전문가의 보상에 관한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,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외부 전문가와의 계약 체결, 변경 및 해지 등은 전적으로 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.

제 11 조(이사회와의 관계)

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며,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안건으로 상정한다.

제 12 조(의사록)

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4 장 기타

제 13 조(간사)

① 위원회 사무 전반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②간사는 인사, 급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담당 임원 또는 부서장으로 한다.

제 14 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03월 26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
2. (개정)

이 규정은 2025년 11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